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25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김태년 · 김준형 · 이기헌

손명수 · 황명선 · 박균택

김영진 · 김태선 · 이훈기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국적,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적·신앙"을 "국적·신앙, 고용형태"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 ② 동일 가치 노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할 때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 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수준
 - 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
 - 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업주가 해당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4.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 제6조(균등한 처우) -----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국적·신앙, 고용형태--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 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의2(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신 설> 동일임금 지급)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할 때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동 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르더라도 직 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 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 의 객관적 수준

- 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

 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
- 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업주가 해당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4.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 • 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해 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